

대구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나307646(본소), 2018나307653(반소) 판결
[건물철거및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18. 11. 21 선고 2018나307646(본소), 2018나307653(반소) 판결
대구지방법원 2018. 4. 20 선고 2016가단1950(본소) 판결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피항소인 A
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기영

피고(반소원고), 항소인 B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민

변론 종결 2018. 10. 17

판결 선고 2018. 11. 21

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. 4. 20. 선고 2016가단1950(본소), 2017가단132288(반소)
판결

주 문

1. 피고(반소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(반소원고)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본소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영천시 C전 764평중 별지 1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기부분 278㎡ 지상목조스레트 지붕단층 창고를 철거하고, 위 n부분토지를 인도하라.

나.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영천시 C 전 764평 중 별지 2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20, 21,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부분 353㎡에 관하여 2015. 1. 26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원고는 피고에게 영천시 C 전 764평 중 별지 2도면 표시 16, 17, 18, 19, 20, 21,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-부분 353㎡에 관하여 2015. 1. 26.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본 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, 피고의 반 소청구는 이유없어이를 기각하여야

할 것인 바,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
기각하기로 하여,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상균판사 김동욱판사 석윤민

별지